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85-01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리포트 편집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유호정

미디어오늘 기자 윤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이 보고서는 리포트 편집팀의 연구·논의를 거친 결과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I.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2
II.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6
1. '사적 제재'와의 관계	6
2. '사적 신상공개' 용어의 의미	7
3. 사적 신상공개의 개념 요소	9
가. 주체의 특성 : '공적' 신상공개와 대비되는 '사적' 신상공개	9
나.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인 '신상정보'와 '일탈행위', 공개의 맥락	10
다. 목적과 동기	12
라. 정보 공개 공간 : 온라인·디지털 공간	13
III. 사적 신상공개의 등장 배경	16
1.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16
2.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20
3.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	22

IV.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 26

1. 주체별 신상공개 관련 제도·특징 비교	26
1)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징	26
2)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신상공개 특징	28
3)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 현황과 특징	31
4)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 특징	32
2.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34
1)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34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	36
3)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38
4)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신상공개	41
5)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43
3. 사적 신상공개의 일반적 양상	45

V.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점 ··· 48

1. 법적인 평가와 구분되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48
2.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49
3.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51
4.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53
5.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56
6.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58

VI.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 62

〈참고〉

참고 1. 사적 신상공개 관련 주요 법령 및 규범	65
참고 2. 주요 개념 및 요약	70

I.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I.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재판,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공개 시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 등을 마련하여 언론의 범죄 보도 시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신중한 보도를 강조해왔다.
- 2020년을 전후로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신상공개 →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 → 언론 보도를 통한 추가 확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¹⁾
- 사적 신상공개는 국가에 의한 신상공개보다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정보통신·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 유통 속도 증가와 그 영향 등 다양한 쟁점과 관련된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적 신상 공개가 반복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반복될 여지도 크다.

1) 사적 신상공개가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개인이 나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선비즈, [사건 포커스] 온라인 신상털이 “불법행위” vs “정의구현” 엇갈린 반응, 2024. 6. 7.; 최보금, 디지털 사적 제재, 이대로 좋은가, KISO 저널 제56호, 2024. 9. 10. 등).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다만, 사적 신상공개에 관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인권적 쟁점이 연관된 문제이며, 이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다양한 층위로 나뉠 수도 있다. 특히, 사적 ‘신상공개’ 쟁점과 ‘제재(복수)’ 쟁점이 혼재되어 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 이에, 이 문제에 관한 리포트를 통해,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여러 사건을 소개한다. 또한,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인권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II.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1. ‘사적 제재’와의 관계

○ 사적 신상공개 관련 논의에서는 ‘사적 제재’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통 사적 제재는 ‘개인에 의한 복수’를 말한다.²⁾ 그 유형으로는 물리적 가해, 언어적 비난과 명예훼손성 정보의 유포, 온라인상 공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고 눈에 띄는 유형이 사적 신상공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의는 ‘사적 신상공개 = 사적 제재’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사적 제재는 복수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특징이 있고, 그 결과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별개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개인에 대한 응징’에만 집중시킴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원인 분석·대안 제시 등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국가와 사회가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한 처벌만을 유일한 제재 수단으로 두는 이유이다.³⁾

2) 사적 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일’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징계나 학교·가정의 훈육으로서의 벌이 아니라, 복수 또는 보복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김대근, [오피니언: 김대근이 소리내다] “대체 누구를 위해 나섰나…‘밀양 사건’ 제3자 사적 제재 논란”, 중앙일보, 2024. 7. 10.

- 오늘날 사적 신상공개로 지칭되는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정보를 퍼뜨리고 다수의 누리꾼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문자, 전화를 통한 협박, 악플 등)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때문에 사적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약 및 정리

- 사적 제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것’이고 회사의 징계, 학교·가정의 훈육 등 벌이 아니라, 복수 또는 보복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 현대 사회에서 사적 제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사적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사적 신상공개’ 용어의 의미

- 일반적으로 ‘신상공개 제도’라고 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제도’(이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또는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는 대부분 위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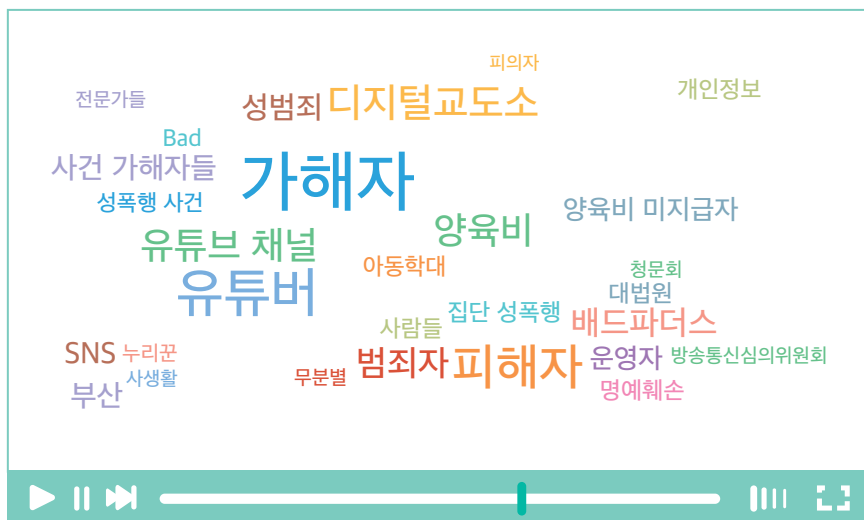
-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는 2020년을 전후로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2018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배드



II.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파더스', 2020년 범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례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지칭하기 위해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대비하여 사용된다.

- 아직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의 의미가 통일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빅카인즈 뉴스 분석을 통해 '사적', '신상', '공개'라는 키워드를 보도한 기사의 연관어를 분석하면, '가해자', '범죄자', '피해자', '유튜브 채널', 'SNS',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 '아동학대' 등과 같은 키워드가 제시된다.



- 즉, 이 용어는 주체, 공개의 맥락, 목적과 동기, 공간적 측면에서 개념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리포트에서는 '사적 신상공개'를 '공적 기관이 아닌 주체가 온라인을 통해 특징인이 일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름, 사진, 연락처 등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그 개념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란 ‘공적 기관이 아닌 주체가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이 일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름, 사진, 연락처 등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인의 행위라는 점(주체), 공개대상자의 일탈행위를 주장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점(공개 맥락), 공개자가 ‘사회적 심판’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내세우는 점(목적과 동기), 온라인·디지털 공간을 통해 신상정보와 공개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유포·확대되는 점(정보 공개 공간)에서 개념적 특징이 있다.

3. 사적 신상공개의 개념 요소

가. 주체의 특성 : ‘공적’ 신상공개와 대비되는 ‘사적’ 신상공개

○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기관이 아닌 주체’(‘사인’)의 행위라는 점이 핵심적 특징이다. ‘공적 기관’이란 경찰, 검찰,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말하고, 넓게 보면 공적 책무가 부여된 언론기관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⁴⁾

○ 이에 대비한 사적 신상공개 주체(이하 ‘공개자’)는 주로 아래와 같다.

-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각 채널 운영자
-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운영진
- 엑스(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등 해당 사건의 관계자

4) 언론기관은 공적 책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 성격을 지니지만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앞서 범죄자 등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와는 다른 인권적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공개자 중 최근 두드러지는 사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채널로 소위 ‘사이버 렉카’⁵⁾ 들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밀양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유튜브 채널의 신상공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로는 ‘배드파더스’, ‘디지털 교도소’가 대표적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 의한 신상공개 사례는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추정되며 잘 알려진 사례로는 2024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있다. 위 세 가지 유형의 공개자들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특징이 있다.

○ 한편,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⁶⁾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거나,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웹사이트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등이다.

나.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인 ‘신상정보’와 ‘일탈행위’, 공개의 맥락

○ ‘신상정보’란 얼굴,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또는 거주지역, 직업 및 가족관계 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사적 신상공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맥락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5) ‘사이버 렉카’란 마치 교통사고 시 렉카 차량처럼 조회수가 되는 현안이 생기면 경쟁적으로 방송하면서 이슈화하고 이득을 취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6)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우선, 공개자는 공개대상자의 일탈행위를 주장한다.⁷⁾ 여기서 ‘일탈행위’는 공개자가 주관적 인식으로 본 공개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며, 실제 법적·사회적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 범죄, 갑질이나 문제가 있는 발언, 채무불이행 등 반 사회적 행위뿐 아니라, 공직자(하급직 공무원)의 업무 행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가족, 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 둘째, 사적 신상공개로 지칭되는 사례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경우이다. ‘공인’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에 관한 사생활 폭로나 이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질 때는 ‘신상공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⁹⁾

○ 셋째, 특정인의 잘못이나 과거 발언 등을 의도적으로 찾고 유포하는 사례와는 구분된다.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사고에 관련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과거 발언·잘못을 찾아 유포하며 그 사람이 마치

7)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단체가 취재를 통해 그 해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사적 신상공개’라고 칭하지는 않는데, 이 용어는 단순히 신상정보 공개 행위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목적과 동기가 연관된 행위로 이해된다.

8) SNS와 개인 미디어 플랫폼의 보편화·일상화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다만, 이 리포트에서는 이에 대해 별론으로 한다.

9) 다만, 예외적으로 디지털 교도소나 사이버 렉카 채널 등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공간에 ‘공인’의 일탈이 공개될 때에는 사적 신상공개로 지칭되기도 한다.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폭로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신상정보’와 ‘일탈행위’를 공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적 신상공개’라기보다는 ‘신상 털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사적 신상공개’와 ‘신상 털기’는 그 방법이 유사하고 상호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인권적 쟁점도 유사하다.

다. 목적과 동기

- 목적과 동기는 사적 신상공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모든 사적 신상공개는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다만,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보통, 공개자들은 사적 신상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많은 언론은 이를 두고 ‘사적 제재인가, 공적 기여인가’, ‘정의 구현과 돈벌이 사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개별 사례에서 공개자들이 제시한 이유, 언론 및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개대상자가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 피해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 채무 이행(양육비, 대출) 등 공개대상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 공론화를 통해 국가 또는 조직의 적정한 대응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 각각의 사례에서 사적 신상공개의 목적은 위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복합되어 있고,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이 ‘피해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신상을 불가피하게 공개한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특히, 이 중 ‘사회적 심판’이 언급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심판’이란, 신상정보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평판의 훼손에서 나아가 더 직접적, 적극적 의미로 공개대상자를 비난, 공격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사인이 공격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심판을 직접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이 사적 신상공개가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라. 정보 공개 공간 : 온라인·디지털 공간

○ 사적 신상공개는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 발생, 증폭된다. 공개자는 많은 사람에게 공개대상자의 일탈행위를 알리고자 하므로, 주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다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언론을 통해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신상공개 →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 → 언론 보도를 통한 추가 확산 → 신상공개 영상, 게시물 등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패턴화된 과정은 주로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된다.



II. 사적 신상공개 의미

- 공개대상자에 대한 사적 제재도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발생한다. 공개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악플, 협박, 저주·모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개 대상자의 학교 또는 직장, 영업장에 대한 항의나 민원 등이 전형적인 예이며, ‘사적 신상공개 →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¹⁰⁾’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¹¹⁾

10) 사이버 공간(cyber)과 괴롭힘(bullying)의 합성어로 대체로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의도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한다(소재환, 현행법상 사이버스토킹 처벌의 제문제(諸問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 여름) 참고).

11) 물론 디지털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다. 공개대상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항의성 메모가 담긴 메모지를 빼곡히 붙여넣는 사례, 공개대상자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송한 사례 등이다.



사적 신상공개의 등장 배경





III. 사적 신상공개의 등장 배경

1.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 사적 신상공개가 일종의 유행처럼 나타나는 배경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특별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¹²⁾ 범죄 발생 건수나 범죄율도 증감을 반복하나 대체로 감소 추세이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이다.¹³⁾

○ 주목할만한 부분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다.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는 비율(57%, 복수응답, 1순위), ‘지금보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91%)도 상당하다. 반면, 형법에서 제시하는 감경, 참작 사유에 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12) 법원, 검찰, 경찰 각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는 27.5%~51.4% 사이이며, 비교적 최근에는 2016~2018년에 비해 더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최근 갱신일 : 2024. 3. 26., 참조날짜 2024. 9. 2.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38#>)

1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2.;
경찰청「범죄통계」, 최근갱신일:2024. 8. 1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6)

인식이 대다수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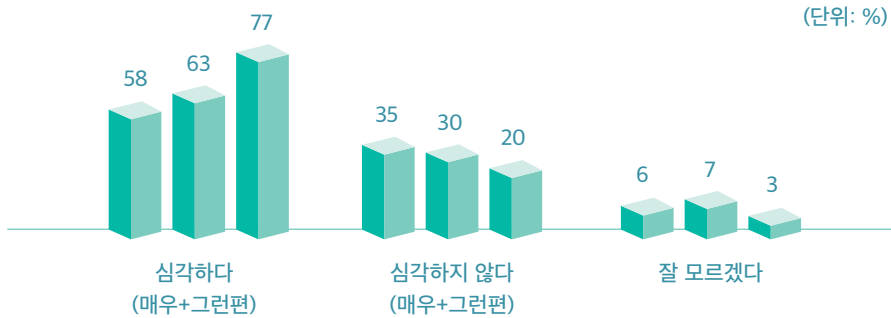
- 즉, 다수의 시민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별개로 범죄에 대해 높은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범죄 예방·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도와 현실은 비일관적인 판결과 불합리한 감형 요소 등으로 범죄자가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주된 인식이다.
-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종종 분노하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적 신상공개 또는 사적 제재를 떠올린다. 이에, ‘다소 불법적인 절차나 방식일지라도’ 가해자의 악행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는 ‘불가피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4)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3, 2024. 5. 30.;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3 범죄 인식조사]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2023. 9. 13.;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4 범죄 인식조사] 범죄 발생 요인 및 범죄 처벌 수준 평가, 2024.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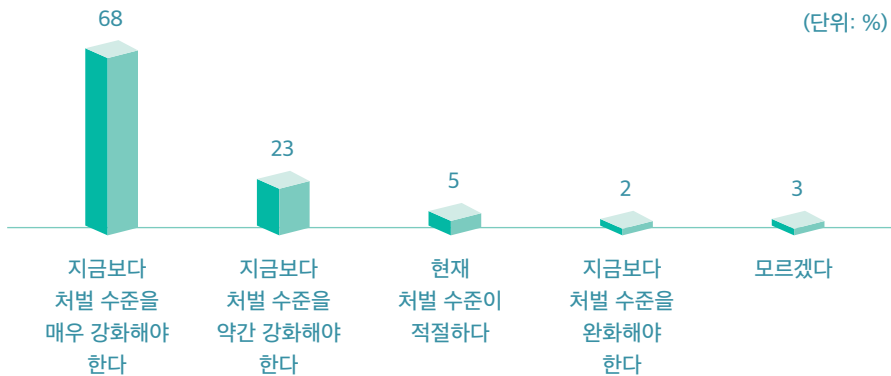
15) 이는 시민들의 인식적인 측면인바, 본 리포트에서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수준이 악한 편인지,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주의 정책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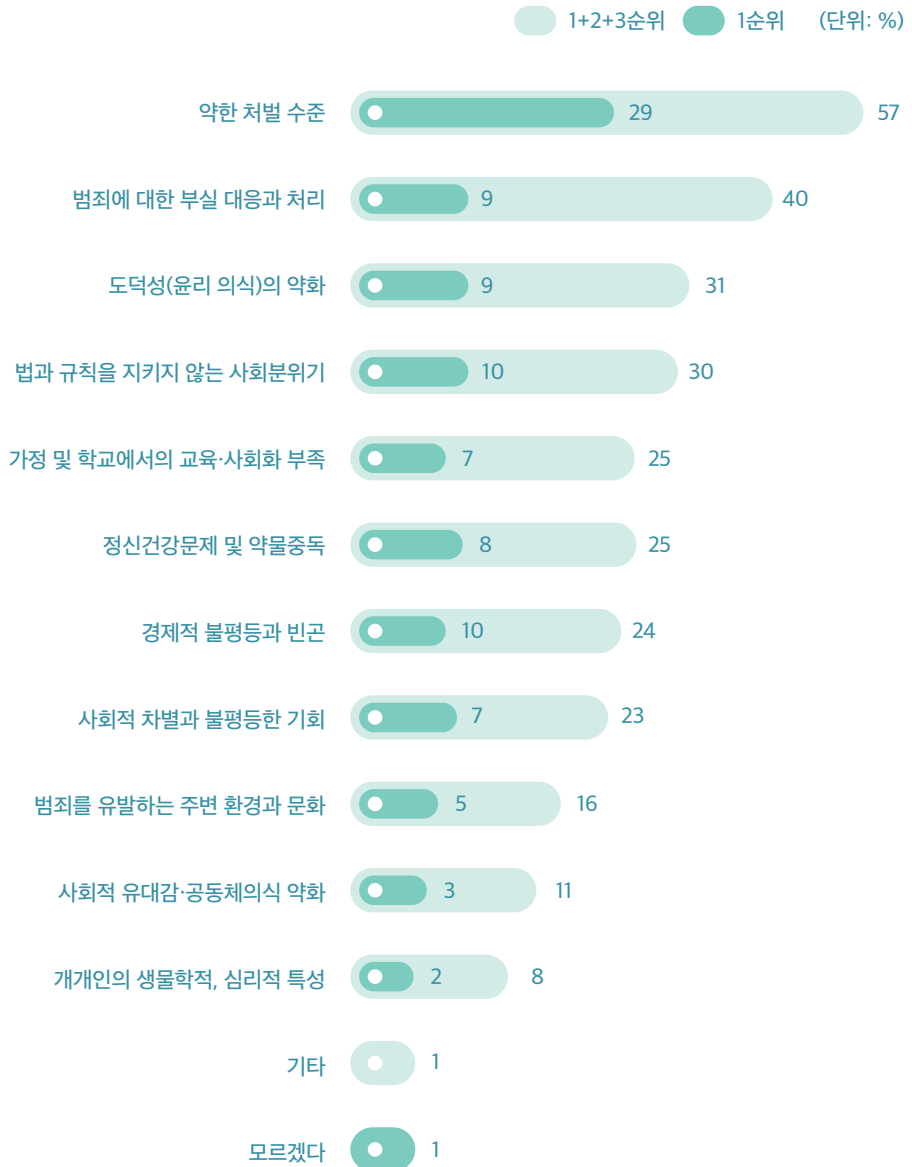
질문: 대한민국 범죄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3명 중 2명, 우리나라 범죄 처벌 수준 ‘매우 강화해야 한다’
현재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 5%, ‘완화해야 한다’ 2%에 그쳐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57%가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아
“범죄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처리 방식”이 뒤를 이으며,
개인·사회적 요인은 후순위





2.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은 사적 신상공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은 조회수, 구독자 수, 댓글 수, 동영상에 머무는 시간 등 시청자의 반응이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도 주요한 수익원이다. '많은 사람의, 많은 관심'이 수익이 되고, 분노 등 감정 동요를 일으킬수록,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십성 정보 일수록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인식된다.¹⁶⁾

○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경쟁적으로 다루는 것은 드라마, 영화, 광고, 언론 등 미디어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은 이와 같은 모습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¹⁷⁾

○ 또한, 일부 사이버 렉카 채널은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스스로 논란이 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들끼리도 나름 경쟁하다 보니 부정적

16) 인터넷 방송에서 발언 맥락에 사용된 여성혐오 발언이 높은 공격성을 보일 때, 더 많은 후원 수익을 얻는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있다(김지수, 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 방송학보>, 33권 3호 참고).

17) 한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렉카 형식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콘텐츠 이용의 주요 동기로 '재미와 충격적 요소가 있는 정보 습득'을 들었다(송병원, 성동규, 사이버렉카 콘텐츠 이용동기가 이용 만족과 지속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4호(2023년 12월) 참고).

이슈에 관한 영상을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며, 결국에는 불법적인 일까지 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¹⁸⁾ 명예훼손으로 실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벌금의 최대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도 개의치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 언론이 사이버 렉카의 콘텐츠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자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언론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다루며 기사에 높은 조회수를 기대하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도로 해당 콘텐츠의 존재를 몰랐던 독자에게도 그 내용이 알려지고, 자극적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반복·증폭되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들은 자율적 규제를 통해 자극적 보도를 자제 하다가도 정보가 일단 공개되어 보도 경쟁이 시작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결국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신상공개 →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 → 언론 보도를 통한 추가 확산 → 신상 공개 영상, 게시물 등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과정이 패턴화되고 있다. 이는 사적 신상공개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도하며 정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18) 헬스조선, 죽음도 고통도 그들에게엔 조회수… 심리학자가 본 ‘사이버렉카’, 2021. 7. 8.



3.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

- ‘사적신상 공개 →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의 구조는 혐오·폭력적인 인터넷 문화에서 파생된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과거 온라인상 혐오·폭력적 행위들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비난과 악플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화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방법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 SNS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를 집단으로 모욕하는 행위, 이런 괴롭힘을 회피하기 위해 채팅방에서 나간 사람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루머를 여러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모욕적·성희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행위,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상 괴롭힘 사례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이버 폭력 또는 사이버불링은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학교 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의 유형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람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¹⁹⁾

19)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0.8%, 성인의 8.0%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7%)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이름·얼굴만 아는 사람 등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가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 익명의 다수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는 형태의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상 '좌표찍기'를 통해 발생한다. '좌표찍기'란 특정 대상에 대해 온라인상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기업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좌표를 찍으면' 다수의 민원을 통해 불만과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의사표시 방법과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협박성인 경우, 신상이 공개된 상대방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²⁰⁾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가 일종의 유행처럼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가 있다.

20) 사이버불링이란 용어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여러 사회적 사건을 겪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겪은 피해자들은 부정적 정서 장애, 외로움, 불안, 우울증,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자가 오프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자살 시도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harisse L. Nixon, Current perspectiv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adolescent health, 2014 Aug 1. 참고).

IV.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사례





IV.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사례

1. 주체별 신상공개 관련 제도·특징 비교

1)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징

○ 국가가 위법, 일탈행위 등을 이유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다.²¹⁾ 이 중 2010년 도입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사적 신상공개와 대비되어 인식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많은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²²⁾ 2023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마련 등 수차례 수정·보완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 제도는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피고인을 대상으로,²³⁾ ▲심의위원회

21) ①법원 판결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②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실시하는 ‘공개 수배 제도’, ③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④‘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제도’ 등(김대근, 수사 중 신상공개제도의 운용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KIC 이슈페이퍼 2020 특별호)』; 김광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3. 3. 30.)

22)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무죄추정의 원칙, 사법부의 예단 우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재사회화 저해, 피의자 가족의 피해, 범죄예방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김대근, 오피니언 [김대근이 소리내다]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험”, 중앙일보, 2024. 2. 28.). 반대로 신상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국민의 알권리, 여죄에 대한 제보를 통한 수사,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제시한다.

23) 특정중대범죄란 살인, 상해, 강도 등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지칭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방화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상자(피의자, 피고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가 신상공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²⁴⁾ ▲수사기관이 얼굴(머그샷 포함),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되, 공개대상자의 의견진술권, 결정 통지 등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²⁵⁾ 즉,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심사요건,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종류, 공개 결정의 절차 및 방법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공개 대상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피의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는 다른 국가도 모든 피의자의 신상을 무제한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에서도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⁶⁾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공개 대상, 범위와 관련되고 언론 또는 일반 국민이 취재, 정보수집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이외에도 피의사실공표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연예인, 운동

24)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의 확보, 공공의 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5) 법원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도 이와 유사하다. 공개 대상범죄,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명, 나이, 주소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출판물 또는 온라인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26) 예를 들어, 2024년 7월 영국 사우스포트(southport)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에 대해 영국 경찰은 상당한 수준의 가짜뉴스와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았다.



선수, 정치인 등과 관련한 수사 정보는 다소 쉽게 공개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⁷⁾

2)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신상공개의 특징

○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수사기관 등 국가에 요구하는 것, 언론기관에 요구하는 것,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범죄에 관한 사항은 언론이 보도해야 할 중요한 공적 과업이지만, 범죄 보도를 하면서 범죄자의 이름, 사진 등 신상을 보도하는 문제²⁸⁾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법·규제 체계, 국민의 법 감정, 알권리²⁹⁾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

○ 언론기관은 범죄자 신상공개 시, 범죄자의 인격권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명예훼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중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인권보도준칙, 언론사 자체적인 내부 기준 등 자율규제도 마련되어 있는데,

27) 이는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공보, ‘공개 소환’, ‘포토라인’,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쟁점이다. 이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28) 우리 법원은 ‘범죄 보도’와 ‘범죄자 신상보도’는 분리할 수 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만큼 공공성이 있지는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29) 다만, 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막연한 개념이고 그 본질은 일반의 ‘호기심’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하는 ‘공공의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고, 응보 성격의 망신주기와 대중의 호기심, 그에 편승한 언론의 상업주의 등이 더 큰 추동력이 된다고 본다(김대근, “피해자 신상 공개와 재현의 정치”, 관훈저널 통권 159호, 2021년 여름호; 김대근, “피의자 신상공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시사인 664호, 2020. 6. 10.).

199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³⁰⁾ 2010년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언론은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2011년 제정)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30) 언론의 피의자 실명보도가 공공성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은 취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자를 익명 처리 및 얼굴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등을 통해 보도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최근 일부 방송사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전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이례적인 사례이다.³¹⁾

○ 많은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원칙적 익명 보도, 예외적 공개' 원칙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적인 언론보도 환경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일탈·범죄 행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 그 사람을 보도하는 방식(사생활 등에 관한 경쟁적·추측성 보도)에 있어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31) 송채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통되는가? -법제도, 경찰, 언론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2022.

3)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의 현황과 특징

-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가 활발히 확산되지도 않는다.³²⁾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도 그 정보가 비교적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어느 정도 과장될 수 있는 ‘일방의 주장’임을 인지한다.
- 이에, 최근에는 피해자들도 직접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유튜브 채널 등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웹 사이트, SNS 채팅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정보 확산의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³³⁾ 제보·공개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2)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직접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받기는 어렵다.

33)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는데,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2023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편집하고 가공해 온라인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스톱킹행위로 규정되었다. 스톱킹행위가 반복·지속되면 형사처벌된다. 아직 피해자의 제보·폭로성 신상공개에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온라인상 ‘좌표 찍기’ 사례에서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한다.³⁴⁾

○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에서도 피해자에 의한 폭로, 신상공개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물론, 이처럼 처벌을 면할 정도로 공적인 이익이 있는 사례는 예외적이고,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신상공개는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4)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의 특징

○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서 주요한 공개자는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SNS 채팅방 운영자 등 제3자이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적 신상공개 사례는 제3자에 의한 것이다.

○ 특히, 인터넷 방송은 사적 신상공개의 주된 주체이다. 특정한 사건의 제보를

34) 사적 전공의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이 법이 적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받고 나름의 취재 후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사건을 달리하여 신상공개를 반복·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정 부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언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적으로는 제도권 언론기관과 구분된다.³⁵⁾ 즉, 인터넷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의 측면에서는 공적 책무가 부여된 언론기관과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중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 등)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웹사이트, SNS를 통한 신상공개는 일관된 특징을 찾아내기 다소 어렵다. 다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신상공개를 반복·지속하는 온라인 공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들이 직접 그 공간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된다.

○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는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와 마찬가지로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신상공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35)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방송의 경우 영상매체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방송’, ‘인터넷신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언론매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언론 관련 법률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일반적인 언론보도와 다르게 언론조정 신청,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같은 피해구제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1)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2020년 6월경 등장했다.³⁶⁾

이 사이트는 ‘범죄자 목록’이라는 카테고리에 3개 범죄 분류(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를 두고,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 사람의 사진·이름·나이·거주지·휴대전화 번호·재판 일정 등 각종 신상정보를 공개했다.³⁷⁾

○ 운영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을 ‘피해자의 고통’이라고 밝혔는데,³⁸⁾ 신상공개 대상에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을 한 판사, 아직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용의자 등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됐다.³⁹⁾ 1기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2020년 9월

36) 이 사이트는 여러 사회적 논란과 경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지면서, 사이트 접속 차단, 자체 폐쇄, 재개설이 반복되었다. 보통 사이트 운영진 교체를 기준으로 1기(2020. 6. ~ 9.), 2기(2020. 9. ~ 10.), 3기(2024. 5. ~ 6.)로 구분한다.

37) 이 사이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범위는 법률적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살인, 전세사기, 음주운전,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 ‘지인능욕’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행위 등이 게시 대상이 되었다. 3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사기 등의 범죄로 신상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8)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한다’, ‘불법인지 알고 있고, 처벌을 감수한다. 법적인 정당성을 찾고자 모욕을 멈출 마음은 없다’, ‘범죄자들에 대한 조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신상공개 대상자)의 자살을 최종목표로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39) ‘숨방망이 판결을 하는 판사도 흉악범죄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판사의 이름·사진·생년월일 등을 게시했고, ‘수배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을 두고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가해 당사자 신원을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제사건에서 용의자로 알려진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문구와 함께 신상이 공개되었다.

까지 176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된다.⁴⁰⁾

○ 운영자는 여러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⁴¹⁾ 신상정보 공개 이후 해당 웹페이지에는 모욕적인 댓글이 상당수 게시 되었고,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공개를 접한 다수의 사람이 공개대상자에게 협박, 저주, 모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잘못된 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 수백 건의 욕설과 저주가 담긴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고, 직업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⁴²⁾

○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전체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러 허위 정보가 유통되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 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했고, 수사 기관도 1기 운영자를 구속기소하였다.⁴³⁾

40) 이 숫자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통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한 신상공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1)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했고, 한 교수는 스스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경찰이 해당 교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동명인인 유튜브의 신상 정보를 잘못 공개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고, 1기 운영자에 대한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위 사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소 3건의 신상공개가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오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서울신문, [인터뷰] “디지털교도소 억울한 신상털이, 이미 난 옥살이”, 2020. 7. 31.; 한겨레, [단독] 디지털교도소 ‘죄없는’ 교수도 성착취범 몰았다, 2020. 9. 8. 등 참조

43) 2021년 9월, 1기 운영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800만 원이 선고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기와 2기 운영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클릭·요청한 사람을 대화방 링크로 초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대가로 스스로 모욕적,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

○ 유튜브 채널 A는 2023년 6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⁴⁴⁾ 피고인의 이름, 얼굴, 나이,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채널은 스스로 ‘사건/사고 종합 탐사 콘텐츠 채널’이라고 소개하는데, 소위 사이버 렉카 채널로 이해되고 있다. 유명 아이돌의 음주운전 사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학교폭력 피해자 인터뷰 등을 게시해왔고, 신상공개 당시 구독자 약 68만 명(신상공개 이후인 2023년 11월 기준 구독자 약 120만 명)의 유튜브 개인 채널이었다.⁴⁵⁾

○ 신상공개 영상 공개 시점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2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유튜브 채널 A의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어 처벌을 감수하고 공개한다’라고 밝혔다.⁴⁶⁾ 약 9분 가량의 이 영상은 언론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전파되었고 2~3일 만에 조회수 약 400만 회

등을 촬영할 것, 본인이 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올 것 등을 강요,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44) 2022년 5월 22일,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중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재판 도중 피고인의 DNA 감정 결과에 따라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2023년 9월 징역 20년,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결정되었다.

45) 다만, 이 채널의 운영자는 2024년 7월경 복수의 사건으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를 겪었고 이에 2024. 10. 기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황이다.

46) MBN,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브 “처벌 감수했다”, 2023. 6. 3.; 조선비즈, “직업 무직”...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한 유튜브가 공개, 2023. 6. 5.

에 달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⁴⁷⁾

○ 다만, 이 영상은 여러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한 언론사는 ‘위 영상이 마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한 신상공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유튜브 채널 A에 의뢰해 이를 공개했다는 인상을 주도록 제작되었으나,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 A에게 신상공개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 이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상공개 영상의 게시가 적절한지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⁴⁸⁾

○ 유튜브 채널 A는 위 보도가 해당 언론사의 인터뷰를 채널 운영자가 거절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취지로 공지글을 게시했으나, 피고인 신상공개가 피해자의 요청이나 사전동의에 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유튜브 채널 A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에 대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신상공개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가 SNS, 언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판 절차 참여와 피해 호소 등 공론화 노력을 하고, 피고인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범죄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권에 관한 논의도 재조명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당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6명(60.1%)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 강력범죄자 신상에 대한 개인공개, 10명 중 6명 ‘찬성’, 2023. 6. 19.; 중앙일보,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영상 474만뷰… 정작 피해자는 당혹스럽다, 2023. 6. 5.).

48) 피해자는 위 보도의 인터뷰에서 “혹시 모를 추가 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의 신상공개를 원했을 뿐이고, 유튜브가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은 영상을 본 뒤에야 알았다”라고 밝혔다(중앙일보,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영상 474만뷰…정작 피해자는 당혹스럽다, 2023. 6. 5.).



3)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 유튜브 채널 B는 2004년에 발생한 소위 ‘밀양 성폭력 사건’⁴⁹⁾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2024년 6월초부터 공개했다. 그러자, 다른 유튜브 채널 C를 비롯해 여러 유튜브 채널이 경쟁적으로 같은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직장, 가족관계 및 사진 등이 공개되었고, 성폭행 가해자만이 아니라, 당시 사건을 담당하며 가해자를 두둔했다고 알려진 경찰관, 당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알려진 고등학교 친구 등의 신상도 공개되었다.

○ 위 유튜브 채널들은 소위 사이버 렉카로 이해됐고, 스스로를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이라고 소개했다. 신상공개 영상에는 ‘아내가 과거의 너를 알고 만난 것이냐’, ‘피해자는 숨어서 쥐 죽은 듯이 살고 너희는 왜 땡땡거리면서 잘 살고 있느냐’, ‘가해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해당 영상들은 2~3일 만에 조회수가 각각 200만 회, 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이렇게 공개된 가해자들의 신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었다.⁵⁰⁾

49)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남고생 44명이 미성년자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약 1년 여 간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고 여러 이유로 형사처벌된 가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부실한 수사 과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친권자의 권리 남용 등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했다.

50) 유튜브 채널 B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구독자 수가 단시간에 9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신상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7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삭제)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여러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를 포함한 다수의 사례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나타나며 많은 영상이 삭제되기도 했다.

○ 공개대상자들은 근무하던 직장·영업장에서 해고, 대기발령, 영업 중단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가족들까지 신상이 공개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협박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⁵¹⁾ 한편,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는데,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지목하여 신상과 사진을 공개한 사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한 사례 등이었다. 위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직업적, 인격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음을 호소했으나 유튜브 채널들은 ‘제보자에게 속았다’,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4년 6월 5일 유튜브 채널 B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영상 삭제, 언론사의 자극적 보도 자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상공개가 계속됐고, 피해자의 음성이 변조없이 방송되거나, 상세한 피해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유포되기도 했다.⁵²⁾

51) 조선일보, 직장 해고 밀양 가해자 “물 한모금 못넘겨, 심정지 온 듯 산다”, 2024. 6. 7.

52)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는 20년이 흐른 현재에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예기치 못했던 온라인에서의 가해자 신상공개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원하는 기관이길래,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나는 욕설이나 악성민원도 폭주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4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⁵³⁾ 또한, 경찰도 8월 초 기준 총 618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⁵⁴⁾ 후원금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⁵⁵⁾

○ 한편, 사건의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자극적인 기사가 문제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B의 첫 신상공개 이후 6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로 수집한 ‘밀양 사건’ 관련 기사는 490건이고, 이 중 많은 기사는 사건 관련 인물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한 부적절한 발언에 따옴표를 붙여 제목에 쓰거나,⁵⁶⁾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을 별다른 취재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수의 기사에 대해 수차례 시정권고, 경고 결정을 하기도 했다.

53) 한경, 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 시정요구, 2024. 7. 4.

54) 경향신문, ‘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첫 구속…범죄수익도 환수 예정, 2024. 8. 8.; 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공범도 구속…잡고보니 공무원 아내, 2024. 8. 13.

55) 특히,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한, 채널 C 운영자의 배우자는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56) 피해자에 대해 “꽃뱀” “꼬리쳤다” 등의 표현을 하거나,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두고 “딸자식을 잘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다는 대목, 가해자 지인으로 알려진 경찰이 피해자 외모를 비하한 표현 등을 제목에 쓴 기사들이다.

57) 미디어오늘,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폭로…2차가해 앞선 일부 언론, 2024. 6. 9.; 민주언론시민연합, 조희수 노린 ‘밀양 성폭력 사건’ 받아쓰기, 사이버택카와 뭐가 다른가, 2024. 6. 11.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7월에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39건의 기사에 ‘주의’를, 2건의 기사에 ‘경고’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위 기사를 쓴 언론매체가 사적제재에 가까운 유튜브들의 무차별 폭로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고, 공개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2024년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2024. 8. 9.)에서 7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위 기사들이 사생활 보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4)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신상공개

○ 2024년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과 관련한 대규모 텔레그램 채팅방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⁵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사 현황, 플랫폼의 역할 등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사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텔레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피해 학교 명단 등이 공유되거나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도 나타났다.⁵⁹⁾

58)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이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다른 사람(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와 같은 방법의 편집, 합성, 가공을 금지하며, 그 결과물의 반포도 금지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한국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SNS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요청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59)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2024. 9.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전교조, 학교 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간접 피해 517건에 달해”, 2024. 8. 29.



○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⁶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하며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여러 채팅방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하나인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일명 ‘보복방’)은 2024년 8월 25일 기준 약 300명이 참여해 있었고, 채팅방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가해자 정보를 공유했다. 공개대상자들의 얼굴 사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부모의 연락처 등이 공유되었고, 공개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한 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다 같이 전화를 걸어 달라”,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채팅방 참가자가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획득한 방법은 다소 불분명한데, 공개자 중 일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방 내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지인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즉, 공개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 등을 살펴보다가 지인이거나 검색을 통해 그 사람의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해당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정황을 볼 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가해자라는 취지이다.

○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고함을 주장

60) 뉴스1, “○○중 2학년 서초구 딥페이크 제작자, 조심”…가해자 신상 유포, 2024. 8. 27.; MBC충북 NEWS, “영동한 사람이 가해자로”.. 딥페이크 공포에 사적 제재 논란, 2024. 8. 27.; 문화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3%가 10대”... 뒤늦은 대책 마련, 2024. 8. 27.

하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사용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⁶¹⁾

5)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가 2018년 개설한 웹사이트이다.⁶²⁾ 이 단체와 운영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 사진, 거주지, 미지급 양육비, 직장명, 연락처 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⁶³⁾
- 이 사이트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었던 은퇴한 스포츠 선수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3년여 동안 약 400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⁶⁴⁾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61) 이 사안은 본 리포트 작성시점인 2024년 10월 기준 아직 진행 중이다.

62) 이 사이트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법으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하며, 양육비 지급이 안 될때 마다 변호사 또는 직접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63) 이 사이트는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리스트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하고’,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비공개’라고 안내한다.

64)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검찰이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⁶⁵⁾

○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⁶⁶⁾ 대법원도 배드파더스가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공개대상자들이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공개 결정이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고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부여되지 않은 점, 얼굴이나 직장명, 전화번호까지 공개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이 이유로 설명됐다.

○ 운영자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보 접수 및 신상공개 방법을 다소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24년 10월 기준 신상공개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카페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 뒤에 신상공개를 실시하겠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65)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재판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를 비교하는 취지의 기사, 논문, 토론 등도 여러 건 있었다.

66) 다만, 2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3. 사적 신상공개의 일반적 양상

○ 앞서 사적 신상공개란 ‘공적 기관이 아닌 주체가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이 일탈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름, 사진, 연락처 등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정의하였고, 개념상 특징으로 주체, 공개 맥락, 목적 또는 동기, 정보 공개 공간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를 배경으로 대두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위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들은 이와 같은 특징과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⁶⁷⁾

○ 우선, 공개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온라인 검색, 제보 등을 통한 것이 대부분 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온라인 게시물 또는 영상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게시물 또는 영상물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만, 공개자가 애초에 수집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는지는 불분명하다.

○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지,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공개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일탈행위,

67) 사적 신상공개의 양상은 피해자에 의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소간 달라지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적 신상공개의 주된 주체는 제3자이고 최근에는 피해자들도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SNS를 이용하여 신상공개를 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심지어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업무 행위나 사생활까지도 공개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⁶⁸⁾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현재 직장이나 가족관계 등 본인이 입수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과 비난을 조장하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공개대상자가 얼마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공개 대상에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 정보), 학교, 직장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면 게시물 또는 영상물을 본 다수의 사람이 온라인과 모바일 상으로 공개대상자를 괴롭히기 쉬워진다.

68) 디지털 교도소, 유튜버 등은 강력범죄자·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수사관, 재판관, 이들의 가족 또는 연인, 수사기관이 공표한 적 없는 용의자의 신상도 공개했다.

V.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점





V.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점

1. 법적인 평가와 구분되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 사적 신상공개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크다. 신상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공개대상자의 피해보다 크고, 공개로 인한 권리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신상공개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 다만, ‘사적 신상공개가 문제인 이유는 현행법상 위법하기 때문이다’라며 논의를 끝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우리 형법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국제사회의 권고나 해외의 입법례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공개자들은 대부분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신상공개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⁶⁹⁾

○ 최근 사적 신상공개가 유행하게 된 계기가 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적 신상공개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다소 불법적인 절차나 방식 일지라도 정당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라면 사적 신상공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다.

69) 사적 신상공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활동 중, 일종의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사회활동, 미투 운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나름의 사회적 의미가 큰 활동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현행법 위반 여부 보다 더 폭넓은 기준으로서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서 더 주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단순히 현행법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가이다. 사적 신상공개는 인권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사적 신상공개 문제점으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⁷⁰⁾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 제재라는 유사한 주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한다.

2.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 전과 등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정보이고 타인이 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범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본인이 겪은 피해를 주장할 때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감정으로 인해 그 내용을 과장·왜곡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 범죄(또는 일탈)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70) 이하에서는 ‘사적 신상공개’ 중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서술한다. 이 중 일부 내용은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대체로 유사한 문제가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사적 신상공개의 주요한 공개자는 제3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무엇이 중요한지 분석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언론기관의 주요 취재원은 수사기관이고 자체적인 절차와 경험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한다. 이처럼 국가기관, 언론기관의 경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 또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범죄 등 일탈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와 비교할 때, 사적 신상공개의 공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디지털 교도소나 여러 유튜브 채널의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주로 당사자나 주변인의 제보, 인터넷 기사 검색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입수하거나 '함정수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위법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허위 제보, 왜곡·과장된 주장, 오염된 정보로 인한 오류에 취약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
-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이 아닌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전파된 사례는 제보자의 주장을 충분한 검증없이 그대로 옮기거나, 과거 잘못 알려진 사실이 정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사실인 것처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공개자들의 정보 수집·검증 방법이 취약하다는 점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공개자들은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과하면서 마치 추후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잘못 공개된 정보를 공개대상자가 해명하고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 또한,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알렸을 때, 공개 대상자는 언론중재법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 사적 신상공개 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 공개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허위 제보, 왜곡·과장된 주장, 오염된 정보로 인한 오류에 취약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
- 잘못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개대상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인격적 고통을 받게 되지만 오류를 정정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어렵다.

3.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 범죄 또는 일탈행위를 이유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⁷¹⁾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제한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채택한 중요한 원리이다.

71) 범죄 또는 일탈행위를 이유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보고서의 이 부분은 범죄자 신상공개가 경우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방법으로서 사적 신상공개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때그때의 판단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공개자의 부정행위, 오류, 과도한 정보공개 및 모욕적 표현 등을 방지할 수 없다.
- 사적 신상공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지,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지 공개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실제 사례에서 공개자들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만, 그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기준이 적절한지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 사실,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주목도나 공개자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예를 들어, 디지털 교도소는 신상공개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제시했지만, 실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범죄뿐 아니라 전세사기, 학교폭력, 워마드 운영자, 관련 사건을 다룬 판사 등이었다. 형이 확정된 사람,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의 구분도 없었고 공개한 정보에는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가족관계가 포함되기도 했다. 범죄의 경중, 공개대상자의 성격, 정보의 민감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개는 매우 자의적이고 공개대상자마다 공개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 여러 유튜브 채널이 공개 대상으로 선택하는 사안들도 사회적 주목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사건으로 집중된다. 이는 신상공개 시 기대되는 영상의 조회수, 후원금액 등 경제적 이익과 연관된다고 이해 되고, 신상공개 대상과 정보를 선택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이 작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활동 하는바, 필요 이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를 모욕하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모욕 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를 조장한다. 공개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사과문 게시 등 협박성 요구를 받기도 한다.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지,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지 공개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고, 사례가 반복된다보면 공개자의 부정행위, 오류, 과도한 정보공개 및 모욕적 표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4.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 사적 신상공개가 근본적으로는 사적 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개자는 공개대상자를 직접 모욕하는 표현을 하거나, 익명의 다수에게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공개대상자를 괴롭히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괴롭힘을 조장하기도 한다. ‘사적신상 공개 →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참여한 익명의 다수는 ‘죄를 지은 자’⁷²⁾에 대한 분노 감정을 모욕적 표현으로 제한없이 표출하면서도 ‘사회적 심판’이라는 목적을 주장하며 이 구조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분노가 정당하고, 국가의 형벌이 미흡해 보인다고 해서,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직접 제재하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제3자 또는 익명의 다수가 이들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직접 모욕, 협박하거나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⁷³⁾

○ 또한, 사적 신상공개와 뒤따르는 사이버불링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연인, 동료들마저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공개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배우자, 연인 등이 학교, 직장, 이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연좌제’로 작용한다. ‘자기의 행위가

72) 형사법의 관점에서는 법원의 판결 이전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죄를 지은 자’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는 표현의 측면에서 사용한다.

73) 일종의 자경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과 문제사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었고(중국 문화대혁명 초기에는 홍위병의 인민재판 사례,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례 등은 그 극단적인 예이다), 수사와 판결 기구의 분리,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대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연좌제’)은 사적 신상공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는 사적 신상공개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이다.

- 한편, 보통 사적 신상공개는 범죄 또는 일탈 혐의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 수사,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공적인 조사 및 제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범죄 또는 일탈 혐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모욕적 표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개대상자는 집중된 여론에 대응하느라 수사나 조사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수사기관과 법관 등 국가기관도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결국, 사적 신상공개가 주장하는 ‘사회적 심판’이 ‘공적인 조사와 제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가 근본적으로 사적 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사적 제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적 신상공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사적신상 공개 →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구조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가해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 사적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의 효과가 있으며, 공적 조사 및 제재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 사적 신상공개의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 또는 피해자의 요청’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유튜브 등에게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법·제도, 현실이 피의자 인권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반감에서 일부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자나 일탈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여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⁷⁴⁾을 원하는 것도 피해 회복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복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적 차원의 지지와 연대도 필요하다. 이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다.

○ 사법 정의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 자체가 아니지만,⁷⁵⁾ 사적 신상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74) 엄벌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예외 없이 모두 적발되어 처벌된다’(확실히 처벌한다)는 뜻과 ‘가해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한다’(강하게 처벌한다)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범죄 예방, 사회 정의, 피해자 인권 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자라 할 수 있다.

75)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의 보호’, ‘사건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3가지를 강조한다. 또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제6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처벌을 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정을 집중하고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소홀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고, 사적 제재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가 다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⁷⁶⁾

○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적 신상공개는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크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과 범죄 피해도 의도치 않게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내포한다. 강력범죄,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사건 가해자,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동반되거나 판결문이 공개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라는 정도로만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알게 되는 역효과도 있다.⁷⁷⁾

○ 또한, 사적 신상공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자극적·선정적인 정보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많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범죄피해자는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 겪은 고통으로

76) 홍성수, 사적 복수에 열광하는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23년 05~06호 이슈돋보기, 2023. 한겨레, 피해자 목소리 경청 않는 '밀양 폭로'...'그냥 피해를 소비하는 것', 2024. 6. 10.

77)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신고자는 물론 아동학대행위자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규제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 공개에 동의 하더라도 보도를 금지한다. 이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예기치 못했던 온라인에서의 가해자 신상공개로 피해 시 겪었던 인권침해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서 새로운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훼손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것이다.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시스템 보완 논의를 저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소외시킨다고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다른 사적 신상공개는 피해자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감한 피해 사실이 전파되거나, 온라인상 감정적인 표현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사이버 렉카 등 공개자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파되기 더욱 쉽다.

6.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 최근 사적 신상공개가 유행처럼 등장한 것은 사적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가 ‘통쾌하다’ 또는 ‘정당하다’라는 인식에서 일부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⁷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되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78)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재판, 형 집행,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과정과 관련한 제도들이며, 각 제도는 하나의 체계(‘형사사법 시스템’)로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각 제도는 피의자(또는 피고인)·피해자의 인권, 수사의 효과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요구에 충분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 다만,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수사와 재판, 형 집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등이 범죄 피해를 당한 개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적절히 수사·처벌되지 않고 있는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사적 신상공개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실제보다 더 무가치한 것으로 묘사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도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이는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분노할만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분노 감정이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운영해 온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인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로 형사사법제도상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사적 신상공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전 사이버 렉카가 피의자의 이름, 사진,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경우,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이므로 이 제도를 통한 공개 결정이나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어느 것도 의미



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 사적 신상공개 등 사적 제재 발생 →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훼손 및 안정적 운영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표현된다. 물론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연관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공적 시스템의 신뢰와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약 및 정리

- 사적 신상공개와 이에 따른 사적 제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적 시스템을 실제보다 더 무가치한 것으로 묘사하고, 실제로도 관련 제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 사적 신상공개 등 사적 제재 발생 →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훼손 및 안정적 운영 저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VI.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VI.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 사적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위법할 여지가 크다. 인권적 관점에서도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다.
- 사적 신상공개 의미와 특징, 대두 배경, 양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적 신상공개 주체가 ‘선한 의도로’ ‘더 엄밀하게 검증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사적 신상공개에 내포된 특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대부분의 사례가 위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이를 드러낸다.
-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사적 신상공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각국에서 대중들의 엄벌주의 경향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⁹⁾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적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시도가 반복될만한 환경으로 보인다.

79) Monica M. Gerber, Attitudes Toward Punishment, 2021. 3.

-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적 신상공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적 신상공개는 이미 현행법상 위법하고, 실제 사례에서 공개자들은 위법하다는 평가를 감수하고 신상공개를 하였다. 이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대응책은 특히 사이버 렉카 등 두드러진 문제를 나타내는 주체에 집중되어왔다.
- 사적 제재 성격의 사적 신상공개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경제적 수익의 환수, 이를 위한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빠른 대응 등이 그것이다. 시민들이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판결문의 적극적 공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진행 등)도 논의되고,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일상 둘 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 다만, 사적 신상공개라는 주제를 살펴보다 보면,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시민들의 정서, 형사사법 시스템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사이버불링 등 폭력적 인터넷 문화 등 한층 층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적절히 처벌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엄벌주의 정책이 피해자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적 제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 이는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염두에 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면적인 현상에만 대응하는 방법만으로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여러 사례, 그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깊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참고 1. 사적 신상공개 관련 주요 법령 및 규범

법령 및 규범	내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公示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령 및 규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및 규범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및 규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및 규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인권보도 준칙」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참고 2. 주요 개념 및 요약

구 분	내용
사적 제재	• 사적 제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것’이고 회사의 징계, 학교·가정의 훈육 등 벌이 아니라, 복수 또는 보복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 현대 사회에서 사적 제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사적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적 신상공개	• 사적 신상공개란 ‘공적 기관이 아닌 주체가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이 일탈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름, 사진, 연락처 등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인의 행위라는 점(주체), 공개대상자의 일탈행위를 주장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점(공개 맥락), 공개자가 ‘사회적 심판’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내세우는 점(목적과 동기), 온라인·디지털 공간을 통해 신상정보와 공개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유포·확대되는 점(정보 공개 공간)에서 개념적 특징이 있다.
사이버 렉카	• ‘사이버 렉카란 마치 교통사고 시 렉카 차량처럼 조회수가 되는 현안이 생기면 경쟁적으로 방송하면서 이슈화하고 이득을 취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 사이버 렉카 채널은 영상매체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방송’,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언론매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언론 관련 법률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사이버불링	• 사이버 공간(cyber)과 괴롭힘(bullying)의 합성어로 대체로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의도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법 제도, 형사 사법 시스템	•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재판, 형 집행,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과정과 관련한 제도들이며, 각 제도는 하나의 체계(‘형사사법 시스템’)로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구 분	내용
사적 신상 공개의 대두배경	• 사적 신상공개가 일종의 유행처럼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가 있다.
(문제 1)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 사적 신상공개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 공개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허위 제보, 왜곡·과장된 주장, 오염된 정보로 인한 오류에 취약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 • 잘못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개대상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인격적 고통을 받게 되지만 오류를 정정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어렵다.
(문제 2)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 사적 신상공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지,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지 공개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고, 사례가 반복되다보면 공개자의 부정행위, 오류, 과도한 정보공개 및 모욕적 표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 3) 익명의 다수 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 사적 신상공개가 근본적으로 사적 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사적 제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적 신상공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사적신상 공개 →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구조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가해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 사적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의 효과가 있으며, 공적 조사 및 제재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구 분	내 용
(문제 4)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 서의 문제	• 사적 신상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시스템 보완 논의를 저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소외시킨다고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다른 사적 신상공개는 피해자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감한 피해 사실이 전파되거나, 온라인상 감정적인 표현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사이버 렉카 등 공개자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파되기 더욱 쉽다.
(문제 5)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 사적 신상공개와 이에 따른 사적 제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적 시스템을 실제보다 더 무가치한 것으로 묘사하고, 실제로도 관련 제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 사적 신상공개 등 사적 제재 발생 →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훼손 및 안정적 운영 저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02)2125-9824 FAX (02)2125-0922
인 쇄 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I S B N 979-11-7214-037-3 93360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